##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1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최민희·김 윤·김태년

김 현 · 문금주 · 양부남

오세희 • 윤건영 • 윤준병

이광희 • 이연희 • 이재관

임미애 · 정진욱 · 조인철

주철현 • 채현일 의원

(17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 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이러한 이유로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필요함.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 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 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법률 제 호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완료한 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1.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를 "계속운전하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행	개 정 안
제21조(허가기준)	①・② (생	제21조(허가기준)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lt;신 설&gt;</u>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
		(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
		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
		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
		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시
		정 또는 보완을 완료한 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	성평가) ①・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계속
		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
		정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공람하게 하여야하며,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

<u>다.</u>					
1.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					
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					
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					
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					
<u>할 것</u>					
<u>④</u>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 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생 략)
- ② ~ ⑤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u>계속운전하기</u>------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